|  |  |  |
| --- | --- | --- |
| **《소기업 회계준칙》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財會 [2011] 17호  국무원 유관 부와 위원회, 유관 직속기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소기업의 회계인식, 계량 및 보고행위를 규율하고 소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당 부는 《소기업 회계준칙》을 제정하였다. 당 부에서 2004년 4월 27일에 인쇄 발부한 《소기업 회계제도》(財會 [2004] 2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집행 중에 발생한 문제는 지체 없이 당 부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첨부: 소기업 회계준칙  재정부  2011년 10월 18일  **소기업 회계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소기업의 회계인식, 계량 및 보고행위를 규율하고 소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소기업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법규에 의거 이 준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하고 《중소기업 유형 획분 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소형 기업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리킨다.  아래의 3가지 소기업은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장에서 주식 또는 채권을 공개 거래하는 소기업  (2)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금융성격을 구비하는 소기업  (3) 기업그룹 내의 모회사와 자회사.  전 항에서 지칭하는 기업그룹, 모회사 및 자회사의 정의는 《기업 회계준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이 준칙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소기업은 이 준칙을 집행할 수도 있고 《기업 회계준칙》을 집행할 수도 있다.  (1) 이 준칙을 적용하는 소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나 사항에 대해 이 준칙에서 규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준칙》 중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 《기업 회계준칙》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 회계준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이 준칙의 관련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이 준칙을 적용하는 소기업이 주식 또는 채권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 회계준칙》을 적용해야 하며, 경영규모나 기업성격의 변화로 인해 이 준칙 제2조의 규정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하고 대중형 기업이나 금융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업 회계준칙》을 적용해야 한다.  (4) 《기업 회계준칙》을 적용하고 있는 상장회사, 대중형 기업과 소기업은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준칙을 적용하는 소기업이 《기업 회계준칙》을 다시 적용 시에는 《기업 회계준칙 제38호--최초 기업 회계준칙 적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자 산**  **제5조** 자산이란 소기업의 과거의 거래 또는 사항으로 형성된, 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컨트롤하는, 소기업에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자산은 유동성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 소기업의 자산은 원가에 따라 계량해야 하며, 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지 아니한다.  **제1절 유동자산**  **제7조** 소기업의 유동자산이란 1년 내(1년 포함, 하동)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하나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예상되는 현금화, 매각 또는 손모 자산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유동자산에는 화폐자금, 단기투자, 미수금 및 선급금, 재고 등이 포함된다.  **제8조** 단기투자란 소기업이 구매한, 수시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며 예상 소지 기간이 1년(1년 포함, 하동)을 초과하지 않는 투자를 가리킨다. 이에는 차액 취득을 목적으로 2급 시장에서 구매한 주식, 채권, 기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기투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1)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단기투자는　구매대금과　관련　세금,　비용을　원가로　계량해야　한다．  실제 지급대금 중에 포함된, 이미 배당하기로 선포했으나 아직 발급하지 않은 현금 이익배당금, 또는 이자 지불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채권이자는 단독으로 미수 이익배당금이나 미수이자로 인식해야 하며, 단기투자 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2) 단기투자 유지기간에 투자대상단위에서 배당하기로 선포한 현금 이익배당금, 또는 채무자의 이자 지불일자의 할부이자, 일괄 원금상환 채권투자의 액면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은 투자수익에 계상해야 한다.  (3) 단기투자를 매각할 때 매각 대금에서 장부잔액과 관련 세금, 비용을 공제한 후의 차액은 투자수익에 계상해야 한다.  **제9조** 미수 및 선급금이란 소기업이 일상적인 생산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한 제반 채권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받을 어음, 매출채권, 미수 이익배당금, 미수이자, 기타 미수금 등의 미수금과 선급금이 포함된다.  미수 및 선급금은 발생한 금액에 따라 장부를 기입해야 한다.  **제10조** 소기업의 미수 및 선급금이 아래의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인식한 회수불능 미수금과 선급금은 악성대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채무자가 법에 의해 파산, 폐쇄, 해산, 취소를 선고받거나 또는 법에 따라 영업집조가 말소, 회수 말소되어 그 청산자산으로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의해 실종, 사망을 선고받고 그 재산이나 유산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3년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고 또한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와 채무 재편합의를 달성하거나 법원에서 파산 정리절차 계획을 승인한 후 배상을 소구할 수 없는 경우  (5) 자연재해,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회수 불가한 경우  (6)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미수 및 선급금의 악성대손은 실제 발생 시에 영업외 지출에 계상하고 동시에 미수 및 선급금을 삭감해야 한다.  **제11조** 재고란 소기업이 일상적인 생산 경영활동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에 대비하는 제품이나 상품, 생산중인 재공품, 생산과정이나 용역제공 과중에서 소모한 소재와 물자 등, 그리고 소기업(농, 임, 목, 어업)이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농산물로 수확할 수 있는 소모성 생산물자를 가리킨다.  소기업의 재고에는 원자재, 재공품, 반성품, 제품과 완성품, 상품, 회전용 자재, 외주가공물자, 소모성 생산물자 등이 포함된다.  (1) 원자재란 소기업이 생산과정 중에서 가공을 거쳐 그 형태나 성격을 변경시키고 동시에 제품의 주요 실체를 구성하는 각종 원료와 주요자재, 보조재, 외부로부터 구매한 반성품(외부구매 자재), 수선용 부품(부품, 비품), 포장재, 연료 등을 가리킨다.  (2) 재공품이란 소기업의 생산중인 미완성 제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각 생산프로세스에서 가공중인 제품과 이미 가공이 완료되었으나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검사를 거쳤으나 입고 처리를 하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다.  (3) 반성품이란 소기업이 일정한 생산과정을 거치고 검사에 합격되어 반성품 창고에 보관시켰으나 아직 제조 완료되지 못한 제품과 완성품으로서 진일보의 가공이 필요한 중간제품을 가리킨다.  (4) 제품과 완성품이란 소기업이 이미 모든 생산과정을 완료하고 검수를 거쳐 입고한, 표준사이즈와 기술조건에 부합되고 계약에서의 약정조건에 따라 주문회사에 인도할 수 있거나 또는 상품으로 대외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5) 상품이란 소기업(도매업, 소매업)이 외부로부터 구매하거나 주문가공을 거쳐 완성함과 아울러 검수를 거쳐 입고한, 각종 판매용 상품을 가리킨다.  (6) 회전용 자재란 소기업이 1회 이상 사용 가능하여 그 가치를 점진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고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자재를 가리킨다. 이에는 포장재, 저가소모품, 소기업(건설업)의 메탈폼, 목형, 비계 등이 포함된다.  (7) 주문가공물자란 소기업이 외주 가공한 각종 자재, 상품 등 물자를 가리킨다.  (8) 소모성 생물자산이란 소기업(농, 임, 목, 어업)의 생장 중인 농작물, 야채, 용재림 및 사육중인 판매용 가축 등을 가리킨다.  **제12조** 소기업이 취득한 재고는 원가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1) 외부구매 재고의 원가에는 구매대금, 관련 세금과 비용, 운송료, 하역비, 보험료, 그리고 재고상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직접적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증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진일보의 가공을 거쳐 취득한 재고의 원가에는 직접적 재료, 직접 인건비 및 일정한 방법에 따라 배분한 제조비용이 포함된다.  1년 이상의 제조를 거쳐 판매 가능한 상태에 달할 수 있는 재고의 차입금도 재고원가에 계상할 수 있다.  전 항에서의 차입금이란 소기업이 자금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와 기타 관련 비용을 가리킨다. 이에는 차입이자, 보조비용 및 외환차입으로 발생된 환차손익 등이 포함된다.  (3) 투자자가 재고에 투자한 원가는 평가가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4) 용역을 제공한 원가에는 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건비, 자재비 및 배분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이 포함된다.  (5) 스스로 재배, 조성, 번식 또는 양식한 소모성 생물자산의 원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① 스스로 재배한 농작물과 야채의 원가에는 수확을 거두기 전에 소모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재료비, 인건비 및 분담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이 포함된다.  ② 스스로 조성한 임목류의 소모성 생물자산 원가에는 막이를 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조림비, 양육비, 영림시설비, 우량종 실험비, 조사설계비 및 분담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이 포함된다.  ③ 스스로 번식한 가축의 사육원가에는 매출전에 발생한 사료비, 인건비 및 배분해야 하는 간접비용이 포함된다.  ④ 수산 양식동물과 식물의 원가에는 매출 또는 입고 전에 소모한 묘목, 사료, 비료 등의 재료비, 인건비 및 배분해야 하는 간접비용이 포함된다.  (6) 재고 평가이익의 원가는 같거나 유사한 재고의 시장가격이나 평가가치에 따라 확정한다.  **제13조** 소기업은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또는 개별원가계산법을 사용하여 재고의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원가계산 방법을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제멋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성질과 용도가 유사한 재고는 동일한 원가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재고의 원가를 확정해야 한다.  대체 사용이 불가한 재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구입하거나 제조한 재고, 그리고 제공한 용역은 개별원가계산법을 사용하여 재고 원가를 확정한다.  회전용 재료는 당기 전액상각법(직접상각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수령할 때 그 원가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당기손익에 계상한다. 금액이 보다 큰 회전용 재료는 분할 상각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다. 임대 또는 대출한 회전용 재료는 원가 이월이 필요 없지만 기재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매출한 재고는 그 원가를 영업원가로 이월해야 한다.  **제14조** 소기업은 생산특성과 원가관리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기업의 원가채산 대상과 원가항목, 원가계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소기업에서 발생한 각종 생산비용은 원가채산 대상과 원가항목 별로 집계해야 한다.  (1) 재료비, 인건비 등의 직접적 비용은 기본 생산원가와 보조 생산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2) 보조 생산직장에서 생산제품에 제공한 동력 등의 직접적 비용은 먼저 보조 생산원가로 처리하여 집계한 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본 생산원가에 배분하여 계상할 수 있거나, 또는 제품의 생산원가에 직접 계상할 수도 있다.  (3) 기타 간접적 비용은 제조비용으로 처리하여 집계해야 하며, 월말에 다시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관련 제품의 원가에 배분하여 계상한다.  **제15조** 재고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처분과 회수 가능한 책임자의 배상, 보험배상에서 원가,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의 차액은 영업외 지출 또는 영업외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이익은 영업외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은 영업외 지출에 계상해야 한다.  **제2절 장기투자**  **제16조** 소기업의 비 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 그 밖의 자산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비 유동자산에는 장기 채권투자, 장기 자본투자, 고정자산, 생산성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 상각비용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장기 채권투자란 소기업이 장기간(1년 이상, 하동) 소지하는 채권투자를 가리킨다.  **제18조** 장기 채권투자는 구매금액과 관련 세금 및 비용에 따라 원가계량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 지불금액에 포함되는, 이자 지불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채권이자는 단독으로 미수이자로 인식하고 장기 채권투자 원가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장기 채권투자 소지기간에 발생한 미수이자는 투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1) 할부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일괄 상환하는 장기 채권투자는 채무자의 이자 지불일의 액면이율에 따라 계산한, 받아야 하나 아직 받지 않은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로 인식해야 하며, 장기 채권투자의 액면잔액을 증가하지 아니한다.  (2)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장기 채권투자는 채무자의 이자지불일의 액면 이율에 따라 계산한 미수이자 수입을 장기 채권투자의 액면 잔액으로 증가해야 한다.  (3) 채권의 가격할인 또는 프리미엄은 채권 존속기간 내에 관련 채권의 이자수입을 인식할 때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해야 한다.  **제20조** 장기 채권투자 기간이 만료되어 소기업이 장기 채권투자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장면잔액을 상계해야 한다.  장기 채권투자를 처분할 때에는 처분대금에서 그 장면잔액과 관련 세금, 비용을 공제한 후의 차액을 투자수익에 계상해야 한다.  **제21조** 소기업의 장기 채권투자가 이 준칙 제10조에 열거한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상계한 후에 인식한 회수불능 장기 채권투자는 장기 채권투자 손실로 처리한다.  장기 채권투자 손실은 실제 발생 시에 영업외 지출에 계상하고 장기 채권투자 액면잔액을 상계해야 한다.  **제22조** 장기 자본투자란 소기업이 장기 소지하는 권익성 투자를 가리킨다.  **제23조** 장기 자본투자는 원가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1) 현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장기 자본투자는 구매 대금과 관련 세금, 비용을 원가로 계량해야 한다.  실제 지불대금에 포함된, 이미 배당하기로 선고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아니한 현금 이익배당금은 단독으로 미수 이익배당금으로 인식해야 하며, 장기 자본투자 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2) 비 화폐성 자산의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장기 자본투자는 비 화폐성 자산으로 환산한 평가가치와 관련 세금, 비용을 원가로 하여 계량해야 한다.  **제24조** 장기 자본투자는 원가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장기 자본투자 소지기간에 투자대상회사가 배당하기로 선고한 현금 이익배당금이나 이익은 배당받을 금액에 따라 그 투자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제25조** 장기 자본투자를 처분할 때에는 처분대금에서 그 원가와 관련 세금, 비용을 공제한 후의 차액을 투자수익에 계상해야 한다.  **제26조** 소기업의 장기 자본투자가 아래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삭감한 후에 인식한 회수불능 장기 자본투자를 장기 자본투자 손실로 한다.  (1) 투자대상회사가 법에 의해 파산, 폐쇄, 해산, 취소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2)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거액의 누계결손이 발생하고 이미 연속 3년 이상 경영을 중지한 동시에 경영을 다시 회복할 재편계획이 없는 경우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지배권이 없고 투자기한이 만료되었거나 투자기한이 10년을 초과하며, 아울러 투자대상회사가 연속 3년간 경영결손이 발생하여 그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4)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황이 엄중하게 악화되어 거액의 누계결손이 발생하고 이미 청산을 완료했거나 또는 청산기간이 3년 이상을 초과한 경우  (5)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의 조건.  장기 자본투자 손실은 실제 발생 시에 영업외 지출에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 자본투자 장면잔액을 상쇄해야 한다.  **제3절 고정자산과 생산성 생물자산**  **제27조** 고정자산이란 소기업이 제품, 용역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소지하고 있는, 사용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고정자산에는 가옥, 건축물, 기계, 기기, 운송수단, 설비, 계기, 기구 등이 포함된다.  **제28조** 고정자산은 원가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구매한 고정자산의 원가에는 구매대금, 관련 세금과 비용, 운송료, 하역비, 보험료, 설치비 등이 포함되며,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증치세 매입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1종 이상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종 고정자산 또는 유사자산의 시장가격이나 평가가치 비율에 따라 총원가에 배분하여 고정자산별로 원가를 확정한다.  (2) 스스로 건설한 고정자산의 원가는 당해 건설자산이 준공되기 전에 발생한 지출(관련 차입비용 포함)로 구성한다.  소기업의 건설중인 공사가 시운전에서 형성된 제품, 부산물 또는 시험생산 수입은 건설공사 원가를 상계한다.  (3) 투자자의 고정자산 투입원가는 평가가치와 관련 세금, 비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4) 융자로 임차한 고정자산의 원가는 임대계약에서 약정한 지불총액과 임대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세금과 비용 등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5)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원가는 같은 유형 또는 유사한 고정자산의 시장가격이나 평가가치에서 당해 고정자산의 노후정도에 따라 예측한 감가상각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확정한다.  **제29조** 소기업은 모든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감가상각을 전액 인출하였으나 계속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단독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기장한 토지는 감가상각을 인출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수익대상에 따라 관련 자산원가나 당기 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전항에서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수명 내에 확정된 방법에 따라 인출해야 하는 감가상각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출해야 하는 감가상각이란 마땅히 인출해야 하는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취득가치(원가)에서 예상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가리킨다. 예상 잔존가치란 고정자산의 예상 사용수명이 만료된 후 소기업이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예상 처분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이미 감가상각을 전액 인출하였음이란 당해 고정자산에 대해 인출해야 하는 감사상각을 이미 전부 인출하였음을 가리킨다.  **제30조** 소기업은 정액법(즉 직선법, 하동)에 따라 감가상각을 인출해야 한다. 소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가속 상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중체감 잔액법과 연수합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소기업은 고정자산의 성격과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아울러 세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고정자산의 사용수명과 예상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사용수명, 예상 잔존가치가 일단 확정되었다면 제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 소기업은 월별로 감가상각을 인출해야 한다. 당월에 증가한 고정자산은 당월에 인출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을 인출하며, 당월에 감소된 고정자산은 당월에 감가상각을 인출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인출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고정자산의 일상 수선비는 발생 시에 고정자산의 수익대상에 따라 관련 자산원가나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제33조** 고정자산의 개축지출은 고정자산의 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다만 이미 감가상각을 전액 인출한 고정자산과 임차한 고정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한 개축지출은 장기선급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전 항에서 고정자산의 개축지출이란 가옥 또는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을 가리킨다.  **제34조**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수입에서 그 장면가치, 관련 세금과 비용, 정리비용을 공제한 후의 차액은 영업외 수입이나 영업외 지출에 계상해야 한다.  전 항에서 고정자산의 장면가치란 고정자산 취득가치(원가)에서 누적 감가상각을 삭감한 후의 금액을 가리킨다.  고정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외 지출에 계상해야 한다.  **제35조** 생산성 생물자산이란 소기업(농, 임, 목, 어업)이 농산품 생산, 용역제공 또는 임대 등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생물자산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경제림, 신탄림, 종축과 역축 등이 포함된다.  **제36조** 생산성 생물자원은 원가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구매한 생산성 생물자산의 원가는 구매대금과 관련 세금, 비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2) 스스로 조성하거나 번식한 생산성 생물자산의 원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① 스스로 조성한 임목류의 생산성 생물자원의 원가에는 예정 생산경영 목적에 달하기 전에 발생한 조림비, 사육비, 영림시설비, 우량종 실험비, 조사설계비 및 분담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 등의 필요한 지출이 포함된다.  ② 스스로 번식한 종축과 역축의 원가에는 예정 생산경영 목적에 달하기 전에 발생한 사료비, 인건비 및 분담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 등의 필요한 지출이 포함된다.  전 항에서 예정 생산경영 목적에 달한다는 것은 생산성 생물자산이 정상적인 생산기에 들어 다년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산품을 산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37조** 생산선 생물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감사상각을 인출해야 한다.  소기업(농, 임, 목, 어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아울러 세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생산성 생물자산의 사용수명과 예상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사용수명, 예상 잔존가치는 일단 확정되었다면 제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소기업(농, 임, 목, 어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을 사용에 투입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월별로 감가상각을 인출해야 한다. 사용을 중지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 인출을 중지한다.  **제4절 무형자산**  **제38조** 무형자산이란 소기업이 제품 생산, 용역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소지하고 있는, 실물형태가 없으나 식별은 가능한 비 화폐성 자산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무형자산에는 토지사용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 등이 포함된다.  스스로 공장건물 등의 건축물을 개발, 건설한 경우 관련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매에 지불한 대금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물과 토지사용권에 배분시켜야 하며, 합리적으로 배분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무형자산은 원가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1) 구매한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구매대금, 관련 세금과 비용, 이와 관련한 기타 지출(관련 차입비용 포함)이 포함된다.  (2) 투자자가 투입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평가가치와 관련 세금, 비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3) 스스로 개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자본화 조건에 부합된 후부터 예정 용도에 달하기 전까지에 발생한 지출(관련 차입비용 포함)로 구성된다.  **제40조** 소기업이 스스로 무형자산을 개발함에 있어서 발생한 지출이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당해 무형자산을 완성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거나 매도하는 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2) 당해 무형자산을 완성함과 아울러 그것을 사용하거나 매도할 의도가 있는 경우  (3) 당해 무형자산을 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시장전망이 있거나 무형자산 자체가 시장전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동 무형자산을 내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  (4) 당해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재무자원과 기타 자원 지원이 있고 당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매도할 능력이 있는 경우  (5) 당해 무형자산 개발단계에 속하는 지출을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 무형자산은 그 사용수명 내에 정액법에 따라 상각해야 하며, 그 수익대상에 따라 관련 자산의 원가나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사용가능 시부터 시작하여 사용을 중지하거나 매출 시에 종료된다. 관련 법률규정이나 계약에서 사용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규정이나 약정한 사용연한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소기업이 무형자산의 사용수명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그 상각기간은 10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수입에서 장면가치와 관련 세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차액은 영업외 수입 또는 지출에 계상해야 한다.  전 항에서 무형자산의 장면가치란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누적 상각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가리킨다.  **제5절 장기 선급비용**  **제43조** 소기업의 장기선급비용에는 이미 감가상각을 전액 인출한 고정자산의 개축지출, 차입 고정자산 경영 중에 발생한 개축지출, 고정자산의 유지보수 지출 및 기타 장기선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전 항에서 고정자산의 유지보수 지출이란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지출을 가리킨다.  (1) 수선 지출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기준의 50% 이상에 도달한 경우  (2) 수선 후 고정자산의 사용수명이 2년 이상 연장된 경우.  **제44조** 장기선급비용은 그 상각기한 내에 정액법에 따라 상각해야 하며, 그 수익대상에 따라 관련 자산의 원가나 관리비용에 계상하고 아울러 장기선급비용을 상계해야 한다.  (1) 이미 감가상각을 전액 인출한 고정자산의 개축지출은 예상되는 고정자산의 잔여 사용연한에 따라 분할 상각할 수 있다.  (2) 차입 고정자산의 경영에 필요한 개축지출은 계약에서 약정한 잔여 임대기간에 따라 분할 상각한다.  (3) 고정자산의 유지보수 지출은 고정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한에 따라 분할 상각할 수 있다.  (4) 기타 장기선급비용은 지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분할 상각하되 상각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 칙**  **제45조** 부채란 소기업의 과거 거래 또는 사항으로 형성된, 소기업 경제이익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 의무를 가리킨다.  소기업의 부채는 그 유동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절 유동부채**  **제46조** 소기업의 유동부채란 1년 내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하나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변제해야 할 예상채무를 가리킨다.  소기업의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지급 종업원 급여, 미납세금과 비용, 미지급 이자 등이 포함된다.  **제47조** 제반 유동부채는 그 실제 발생액에 따라 기장해야 한다.  소기업이 상환하지 못하는 미지급금은 영업외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제48조** 단기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이자지급일에 차입원금과 차관계약의 이율에 따라 인출하여 재무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제49조** 미지급 종업원급여란 소기업이 종업원의 봉사를 얻기 위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형식의 보수와 기타 필요한 지출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종업원급여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다.  (1) 종업원의 임금, 상금, 수당 및 보조금  (2) 종업원의 복리비  (3) 의료보험료, 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출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4) 주택적립금  (5) 노조경비와 종업원 교육경비  (6) 비화폐성 복리  (7) 종업원과의 노동관계 해지에 필요한 보상  (8) 종업원의 봉사를 얻기 위한 기타 지출 등.  **제50조** 소기업은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 봉사하는 회계기간에 미지급 종업원의 급여를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종업원이 제공한 봉사의 수익대상에 따라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1) 생산제품, 제공용역으로 부담해야 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제품원가 또는 용역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2) 건설중인 공사, 무형자산 개발프로젝트로 부담해야 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고정자산 원가 또는 무형자산 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3) 기타 종업원의 급여(종업원과의 노동관계 해지에 필요한 보상 포함)는 당기손익에 계상한다.  **제2절 비 유동부채**  **제51조** 소기업의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 이외의 부채를 가리킨다.  소기업의 비 유동부채에는 장기차관, 장기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제52조** 비 유동부채는 그 실제 발생액에 따라 기장해야 한다.  장기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이자지급일에 차입원금과 차관계약의 이율에 따라 인출하고 관련 자산원가 또는 재무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제4장 소유자권익**  **제53조** 소유자권익이란 소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소유자가 향유하는 잔여이익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소유자권익에는 실수자본(또는 자본금, 하동), 자본적립, 잉여적립금 및 미배당이익이 포함된다.  **제54조** 실수자본이란 투자자가 계약에서 합의된 약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투입하여 소기업의 등록자본으로 구성된 부분을 가리킨다.  (1) 소기업이 유치한 투자자의 현금 또는 비 화폐성 자산의 투입자본은 기업 등록자본 중에서 차지한 지분에 따라 실수자본에 계상해야 하며, 초과 부분은 자본적립에 계상해야 한다.  (2) 투자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대해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소기업은 그 실수자본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제55조** 자본적립이란 소기업이 유치한 투자자의 출자액이 그 등록자본이나 차지한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을 가리킨다.  소기업이 자본적립으로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적립을 상계해야 한다. 소기업의 자본적립은 결손 보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6조** 잉여적립이란 소기업이 법률규정에 따라 납세후의 이익에서 인출한 법정 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가리킨다.  소기업이 잉여적립으로 결손을 보완하거나 자본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잉여적립을 상계해야 한다. 소기업의 잉여적립은 생산경영의 확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 미배당이익이란 소기업이 실현한 순이익으로서, 결손을 보완하거나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후 본 기업이 남기는 다년간에 누적된 이익을 가리킨다.  **제5장 수 입**  **제58조** 수입이란 소기업이 일상 생산경영 활동 중에서 형성된, 소유자권익의 증가 또는 소유자 투자자본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총유입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상품의 판매수입과 용역제공 수입이 포함된다.  **제59조** 상품 판매수입이란 소기업이 상품(또는 제품과 완성품, 소재, 하동) 판매로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상품을 발송한 후 대금을 받았거나 대금 수취권한을 취득한 시부터 상품의 판매수입을 인식해야 한다.  (1) 추심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추심수속 완료 시에 수입을 인식한다.  (2) 선수금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을 발송 시에 수입을 인식한다.  (3) 수금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자에 수입을 인식한다.  (4) 판매 상품이 설치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매측이 상품을 접수하고 설치, 검사가 완료된 시에 수입을 인식한다. 설치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는 상품을 발송할 때 수입을 인식할 수 있다.  (5) 판매상품을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위탁 판매한 경우 위탁판매리스트를 접수 시에 수입을 인식한다.  (6) 이구환신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상품은 판매상품으로 처리하고 회수한 상품은 구매상품으로 처리한다.  (7) 제품 배당방식으로 취득한 수익은 제품을 배당 받은 날의 제품 시장가격이나 평가가치에 따라 판매상품의 수입금액을 확정한다.  **제60조** 소기업은 구매측으로부터 이미 수취하였거나 수취해야 하는 계약 또는 합의 대금에 따라 판매상품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판매상품이 현금할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에 따라 판매상품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현금할인은 실제 발생 시에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판매상품이 상업할인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업할인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따라 판매상품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 항에서 현금할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채무공제를 가리킨다. 상업할인이란 소기업이 상품판촉을 위해 상품의 정찰가격으로 제공하는 가격할인을 가리킨다.  **제61조** 소기업이 이미 상품 판매수입을 인식한 매출상품이 반품(본 연도나 이전 연도의 매출여부를 불문)된 경우에는 당기 매출상품의 수입을 삭감해야 한다.  소기업이 이미 상품 판매수입을 인식한 매출상품이 판매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 매출상품의 수입을 삭감해야 한다.  전 항에서 반품이란 소기업이 매출한 상품의 품질, 품종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한 반품을 가리킨다. 매출할인이란 소기업이 매출한 상품의 품질 불합격 등의 원인으로 인한 매출가격의 할인을 가리킨다.  **제62조** 소기업에 제공한 용역수입이란 소기업이 건축설치, 수선수리, 교통운송, 창고임대, 우체통신, 자문거간,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양성, 요식과 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지역사회서비스, 관광, 오락, 가공 및 기타 용역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제63조** 동일 회계연도 내에 시작하여 완성한 용역은 용역제공 거래를 완성함과 아울러 대금을 받았거나 수금권리를 취득한 시부터 제공한 용역수입을 인식해야 한다. 용역제공 수입금액은 용역 접수측으로부터 이미 수취했거나 수취해야 하는 계약이나 합의 대금을 가리킨다.  용역의 개시와 완성이 한 개 회계연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완공 진도에 따라 제공한 용역수입을 인식해야 한다. 연도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제공한 용역 수입총액에 완공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 이 전 회계연도에 인식한 누적 용역제공 수입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따라 본 연도의 용역제공 수입으로 인식하며, 동시에 제공용역의 예측 원가총액에 완공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 이 전 회계연도에 인식한 누적 영업원가를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본 연도의 영업원가를 이월해야 한다.  **제64조** 소기업이 기타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서에 상품판매와 용역제공이 포함될 때, 상품판매 부분과 용역제공 부분을 구분함과 아울러 단독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매상품의 부분을 판매상품으로 처리하고 용역제공 부분은 용역제공으로 처리해야 한다.  판매상품 부분과 용역제공 부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또는 구분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상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6장 비 용**  **제65조** 비용이란 소기업이 일상적인 생산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소유자의 권익 감소를 초래하고 소유자의 이익배당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의 총유출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비용에는 영업원가, 영업세금과 부가,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등이 포함된다.  (1) 영업원가란 소기업이 판매한 상품원가와 제공한 용역원가를 가리킨다.  (2) 영업세금과 부가란 소기업이 일상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도시토지사용세, 부동산세, 차량선박세, 인지세와 교육비부가, 광산자원 보상비, 오물배출비 등을 가리킨다.  (3) 판매비용이란 소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판촉직원의 급여, 상품 유지보수비, 운송료, 하역비, 포장비, 보험료, 광고비, 업무홍보비, 전람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소기업(도매업, 소매업)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운송료, 하역비, 포장비, 보험료, 운송 도중의 합리적인 손모 및 입고 전의 선별정리비 등 포함)도 판매비용에 포함된다.  (4) 관리비용이란 소기업이 생산경영을 조직, 관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소기업이 설립 준비기간에 발생한 창업비, 행정관리부서의 요금(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사무비용, 수도와 전기요금, 출장비, 관리인원의 급여 등이 포함), 업무접대비, 연구비용, 기술양도비, 관련 장기선급비용의 상각, 재산보험료, 중개기구 위촉비, 자문비(고문비 포함), 소송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5) 재무비용이란 소기업이 생산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이자비용(수입이자 차감), 환차손실, 은행 관련 수수료, 소기업이 제공한 현금할인(향수한 현금할인 차감)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제66조**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비용은 발생 시에 그 발생액에 따라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소기업의 상품판매 수입과 용역제공 수입이 이미 인식된 경우에는 이미 판매한 상품과 제공한 용역의 원가를 영업원가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이월해야 한다.  **제7장 이익과 이익배당**  **제67조** 이익이란 소기업의 일정한 회계기간의 경영실적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영업이익, 이익총액 및 순이익이 포함된다.  (1) 영업이익이란 영업수입에서 영업원가, 영업세금과 부가, 판촉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수익(또는 투자손실 차감)을 더한 후의 금액을 가리킨다.  전 항에서 영업수입이란 소기업이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으로 실현한 수입총액을 가리킨다. 투자수익은 소기업의 자본투자로 취득한 현금 이익배당금(또는 이익), 채권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자수입과 자본투자와 채권투자 처분으로 취득한 대금에서 원가나 액면잔액,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 등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이익총액이란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입을 더하고 영업외 지출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가리킨다.  (3) 순이익이란 이익총액에서 소득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제68조** 영업외 수입이란 소기업의 비일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으로 형성된,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하고 소유자권익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자 투입자본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의 순유입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영업외 수입에는 비유동자산 처분수익, 정부의 보조, 기증수익, 재고자산 평가이익, 환차이익, 포장물과 상품의 임대료 수입,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환불하지 않은 포장물의 보증금 수익,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 이미 악성대손으로 처리한 후 수취한 미수금, 위약금 수익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영업외 수입은 수입이 실현되었을 때 그 금액에 따라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제69조** 정보의 보조란 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정부가 소기업의 소유자로서 투입한 자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기업이 받은 자산 관련 정부의 보조는 이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자산의 사용수명 내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영업외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기타 보조금을 본 기업의 향후 기간의 관련 비용이나 결손 보완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비용이나 발생한 결손을 확인하는 기간에 영업외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본 기업에 발생한 관련 비용과 결손 보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영업외 수입에 계상한다.  (2) 정부의 화폐성 자산보조는 받은 금액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정부의 비 화폐성 자산보조는, 정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계량하며, 정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나 유사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평가가치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3) 소기업이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의 선징수 후환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기업소득세, 증치세(수출세금 환급 불포함), 소비세, 영업세를 환급 받았을 때에 영업외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제70조** 영업외 지출이란 소기업이 비일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계상하여 소유자의 권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자 이익배당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의 순유출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영업외 지출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훼손, 폐기처분 손실, 비 유동자산 처분 정미순실, 악성대손, 회수불능 장기 채권투자 손실, 회수불능 장기자본투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초래된 손실, 세금체납금, 벌금, 벌과금, 몰수당한 재산 손실, 기증지출, 찬조지출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영업외 지출은 지출이 발생 시에 그 발생액에 따라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제71조** 소기업은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기 의무납세액에 따라 소득세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소기업은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익총액에 대한 납세조정을 실시하여 당기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과세대상소득금액과 소득세 적용세율에 따라 당기 의무납세액을 계산, 확정해야 한다.  **제72조** 소기업이 당해 연도의 순이익으로 이전 연도의 결손 등을 보완한 후의 잔여 세후이익은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소기업(회사제)이 당해 연도의 세후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8장 외환업무**  **제73조** 소기업의 외환업무는 외환거래와 외환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구성된다.  **제74조** 외환거래란 소기업이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거나 결산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소기업의 외환거래에는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 또는 매출하거나 외환자금을 차입 또는 대출하거나,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거나 결산하는 기타 거래가 포함된다.  전 항에서 외환이란 소기업의 기장 본위화폐 그 밖의 화폐를 가리킨다. 기장 본위화폐란 소기업의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경제적 환경에서의 화폐를 가리킨다.  **제75조** 소기업은 인민폐를 기장 본위화폐로 해야 한다. 업무지출에서 인민폐 이외의 화폐를 위주로 하는 소기업은 그중 일종의 화폐를 기장 본위화폐로 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재무제표는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여야 한다.  소기업의 기장 본위화폐가 일단 확정되었다면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소기업의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기업의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기장 본위화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당일의 현물환율에 따라 모든 항목을 변경한 후의 기장본위화폐로 환산해야 한다.  전 항에서 현물환율이란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당일 인민폐 외환거래가격의 중간가격을 가리킨다.  **제76조** 소기업에서 발생한 외환거래는 외환금액을 기장본위화폐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외환거래를 초기에 인식할 때에는 거래 발생일의 현물환율에 따라 외환금액을 기장본위화폐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거래 당기의 평균 환율로 환산할 수도 있다.  소기업이 투자자의 외환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거래 발생일의 현물환율로 환산해야 하며, 계약에서 약정한 환율과 거래 당기의 평균 환율로 환산해서는 아니된다.  **제77조** 소기업은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화폐성 외환항목과 비 화폐성 외환항목에 대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1) 화폐성 외환항목은 대차대조표 기준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대차대조표 기준일의 현물환율이 초기 인식 시 또는 그전 대차대조표 기준일의 현물환율과 달라 발생된 환차는 당기손익에 계상한다.  (2) 과거원가로 계량한 비 화폐성 외환항목은 여전히 거래발생일의 현물환율로 환산하며, 그 기장 본위화폐 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전 항에서 화폐성 항목이란 소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화폐성 자금과 고정적으로나 확정 가능한 금액으로 수취할 자산 또는 상환할 부채를 가리킨다. 화폐성 항목은 화폐성 자산과 화폐성 부채로 구분한다. 화폐성 자산에는 재고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 기타 미수금 등이 포함되며, 화폐성 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기타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비 화폐성 항목이란 화폐성 항목 그 밖의 항목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재고, 장기자본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 등이 포함된다.  **제78조** 소기업이 외환 재무제표로 환산 시에는 대차대조표 기준일의 현물환율에 따라 외환 대차대조표, 이익표 및 현금흐름표의 모든 항목에 대해 환산해야 한다.  **제9장 재무제표**  **제79조** 재무제표란 소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실적, 현금흐름에 대한 구조성 서술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최소 아래의 구성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이익표  (3) 현금흐름표  (4) 비고.  **제80조** 대차대조표란 소기업이 하나의 특정일자의 재무상황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가리킨다.  (1) 대차대조표 중의 자산종류는 적어도 아래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① 화폐자금  ② 미수금 및 선급금  ③ 재고  ④ 장기 채권투자  ⑤ 장기 자본투자  ⑥ 고정자산  ⑦ 생산성 생물자원  ⑧ 무형자산  ⑨ 장기선급비용.  (2) 대차대조표 중의 부채종류에는 적어도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① 단기차입금  ② 미지급금 및 선급금  ③ 미지급 종업원의 급여  ④ 미납세금과 비용  ⑤ 미지불 이자  ⑥ 장기차입금  ⑦ 장기 미지급금  (3) 대차대조표의 소유자권익에는 적어도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① 실수자본  ② 자본적립  ③ 잉여적립  ④ 미배당이익.  (4) 대차대조표 중의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 유동자산의 합계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채에는 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및 부채의 합계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유자권익에는 소유자권익의 합계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항목, 부채 및 소유자권익총계 항목을 나열해야 한다.  **제81조** 이익표란 소기업의 일정 회계기간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가리킨다.  비용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영업원가, 영업세금과 부가,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익표에는 적어도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① 영업수입  ② 영업원가  ③ 영업세금과 부가  ④ 판매비용  ⑤ 관리비용  ⑥ 재무비용  ⑦ 소득세비용  ⑧ 순이익.  **제82조** 현금흐름표란 소기업의 일정 회계기간의 현금유입과 유출 상황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가리킨다.  현금흐름표는 경영활동, 투자활동 및 자금조달 활동에 따라 현금흐름을 나열해야 한다.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총액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 항에서 현금이란 소기업의 현금잔고와 수시로 지불할 수 있는 예금, 그리고 기타 화폐자금을 가리킨다.  **제83조** 경영활동이란 소기업의 투자활동과 자금적립 활동 이외의 모든 거래와 사항을 가리킨다.  소기업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1) 제품과 완성품, 상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으로 수취한 현금  (2) 원자재, 상품 구매 또는 용역접수로 지불한 현금  (3)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  (4) 납부한 세금과 비용.  **제84조** 투자활동이란 소기업의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 유동자산의 건설과 단기투자, 장기 채권투자, 장기자본투자 및 그 처분활동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1) 단기투자, 장기 채권투자 또는 장기자본투자 회수로 수취한 현금  (2) 투자수익의 취득으로 수취한 현금  (3)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 유동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현금  (4) 단기투자, 장기 채권투자 및 장기자본투자로 지급한 현금  (5)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 유동자산 건설에 지급한 현금.  **제85조** 자금조달 활동이란 소기업의 자본 및 채무규모와 구성 변화를 초래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소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에는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는 항목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1) 자금 차입으로 받은 현금  (2) 투자자의 투자유치로 받은 현금  (3)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지급한 현금  (4)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지급한 현금  (5) 이익배당으로 지급한 현금.  **제86조** 비고란 대차대조표, 이익표 및 현금흐름표 등 보고서 중에 나열한 항목에 대한 문자 서술이나 명세자료, 그리고 본 보고서에 나열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설명 등을 가리킨다.  비고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피로해야 한다.  (1) 소기업 회계준칙을 준수하는 성명  (2) 단기투자, 매출채권, 재고, 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설명  (3) 미지급 종업원 급여, 미납세금 항목에 대한 설명  (4)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  (5) 대외담보에 사용한 자산명칭, 액면금액 및 형성된 원인, 미결소송, 미결중재 및 대외 담보제공과 관련한 금액  (6) 심각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속적 경영계획, 향후 경영 방안을 피로해야 한다.  (7) 대차대조표와 이익표 중에 나열한 항목이 기업소득세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의 납세조정 과정.  (8) 비고 중에 설명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87조** 소기업은 실제 발생한 거래와 사항에 근거하여 본 준칙의 규정에 따라 인식과 계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88조** 소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회계예측을 변경하거나 회계오류를 정정할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전 항에서 회계정책이란 소기업이 회계인식, 계량 및 보고서 중에서 적용한 원칙, 기준 및 회계처리 방법을 가리킨다. 회계예측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당면 상황 및 예상 경제이익과 의무에 변화가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와 부채의 액면가치나 자산의 정기 소모금액에 대해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기오류에는 계산오류, 회계정책 적용오류, 회계예측 응용오류 등이 포함된다. 전진법이란 변경 후의 회계정책과 회계예측을 변경일 및 그 후에 발생하는 거래나 사항에 응용하거나 또는 회계오류가 발생하거나 발견한 당기에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제10장 부 칙**  **제89조** 《중소기업유형 구분기준 규정》에서 규정한 마이크로형 기업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 준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90조** 이 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04년에 반포한 《소기업 회계제도》(財會 [2004] 2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부록: 소기업 회계준칙--회계과목, 주요재무처리 및 재무제표 |  | **关于印发《小企业会计准则》的通知**  财会[2011]17号    国务院有关部委、有关直属机构，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了规范小企业会计确认、计量和报告行为，促进小企业可持续发展，发挥小企业在国民经济和社会发展中的重要作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及其他有关法律和法规，我部制定了《小企业会计准则》，现予印发，自2013年1月1日起在小企业范围内施行，鼓励小企业提前执行。我部于2004年4月27日发布的《小企业会计制度》（财会[2004]2号）同时废止。  执行中有何问题，请及时反馈我部。    附件：小企业会计准则  　 　 财政部 二○一一年十月十八日  **小企业会计准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小企业会计确认、计量和报告行为，促进小企业可持续发展，发挥小企业在国民经济和社会发展中的重要作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及其他有关法律和法规，制定本准则。  **第二条** 本准则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符合《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所规定的小型企业标准的企业。  下列三类小企业除外：  （一）股票或债券在市场上公开交易的小企业。  （二）金融机构或其他具有金融性  质的小企业。  （三）企业集团内的母公司和子公司。  前款所称企业集团、母公司和子公司的定义与《企业会计准则》的规定相同。  **第三条** 符合本准则第二条规定的小企业，可以执行本准则，也可以执行《企业会计准则》。  （一）执行本准则的小企业，发生的交易或者事项本准则未作规范的，可以参照《企业会计准则》中的相关规定进行处理。  （二）执行《企业会计准则》的小企业，不得在执行《企业会计准则》的同时，选择执行本准则的相关规定。  （三）执行本准则的小企业公开发行股票或债券的，应当转为执行《企业会计准则》；因经营规模或企业性质变化导致不符合本准则第二条规定而成为大中型企业或金融企业的，应当从次年1月1日起转为执行《企业会计准则》。  （四）已执行《企业会计准则》的上市公司、大中型企业和小企业，不得转为执行本准则。  **第四条** 执行本准则的小企业转为执行《企业会计准则》时，应当按照《企业会计准则第38号——首次执行企业会计准则》等相关规定进行会计处理。  **第二章 资 产**  **第五条** 资产，是指小企业过去的交易或者事项形成的、由小企业拥有或者控制的、预期会给小企业带来经济利益的资源。  小企业的资产按照流动性，可分为流动资产和非流动资产。  **第六条** 小企业的资产应当按照成本计量，不计提资产减值准备。  **第一节 流动资产**  **第七条** 小企业的流动资产，是指预计在1年内（含1年，下同）或超过1年的一个正常营业周期内变现、出售或耗用的资产。  小企业的流动资产包括：货币资金、短期投资、应收及预付款项、存货等。  **第八条** 短期投资，是指小企业购入的能随时变现并且持有时间不准备超过1年（含1年，下同）的投资，如小企业以赚取差价为目的从二级市场购入的股票、债券、基金等。  短期投资应当按照以下规定进行会计处理：  （一）以支付现金取得的短期投资，应当按照购买价款和相关税费作为成本进行计量。  实际支付价款中包含的已宣告但尚未发放的现金股利或已到付息期但尚未领取的债券利息，应当单独确认为应收股利或应收利息，不计入短期投资的成本。  （二）在短期投资持有期间，被投资单位宣告分派的现金股利或在债务人应付利息日按照分期付息、一次还本债券投资的票面利率计算的利息收入，应当计入投资收益。  （三）出售短期投资，出售价款扣除其账面余额、相关税费后的净额，应当计入投资收益。  **第九条** 应收及预付款项，是指小企业在日常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各项债权。包括：应收票据、应收账款、应收股利、应收利息、其他应收款等应收款项和预付账款。  应收及预付款项应当按照发生额入账。  **第十条** 小企业应收及预付款项符合下列条件之一的，减除可收回的金额后确认的无法收回的应收及预付款项，作为坏账损失：  （一）债务人依法宣告破产、关闭、解散、被撤销，或者被依法注销、吊销营业执照，其清算财产不足清偿的。  （二）债务人死亡，或者依法被宣告失踪、死亡，其财产或者遗产不足清偿的。  （三）债务人逾期3年以上未清偿，且有确凿证据证明已无力清偿债务的。  （四）与债务人达成债务重组协议或法院批准破产重整计划后，无法追偿的。  （五）因自然灾害、战争等不可抗力导致无法收回的。  （六）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应收及预付款项的坏账损失应当于实际发生时计入营业外支出，同时冲减应收及预付款项。  **第十一条** 存货，是指小企业在日常生产经营过程中持有以备出售的产成品或商品、处在生产过程中的在产品、将在生产过程或提供劳务过程中耗用的材料和物料等，以及小企业（农、林、牧、渔业）为出售而持有的、或在将来收获为农产品的消耗性生物资产。  小企业的存货包括：原材料、在产品、半成品、产成品、商品、周转材料、委托加工物资、消耗性生物资产等。  （一）原材料，是指小企业在生产过程中经加工改变其形态或性质并构成产品主要实体的各种原料及主要材料、辅助材料、外购半成品（外购件）、修理用备件（备品备件）、包装材料、燃料等。  （二）在产品，是指小企业正在制造尚未完工的产品。包括：正在各个生产工序加工的产品，以及已加工完毕但尚未检验或已检验但尚未办理入库手续的产品。  （三）半成品，是指小企业经过一定生产过程并已检验合格交付半成品仓库保管，但尚未制造完工成为产成品，仍需进一步加工的中间产品。  （四）产成品，是指小企业已经完成全部生产过程并已验收入库，符合标准规格和技术条件，可以按照合同规定的条件送交订货单位，或者可以作为商品对外销售的产品。  （五）商品，是指小企业（批发业、零售业）外购或委托加工完成并已验收入库用于销售的各种商品。  （六）周转材料，是指小企业能够多次使用、逐渐转移其价值但仍保持原有形态且不确认为固定资产的材料。包括：包装物、低值易耗品、小企业（建筑业）的钢模板、木模板、脚手架等。  （七）委托加工物资，是指小企业委托外单位加工的各种材料、商品等物资。  （八）消耗性生物资产，是指小企业（农、林、牧、渔业）生长中的大田作物、蔬菜、用材林以及存栏待售的牲畜等。  **第十二条** 小企业取得的存货，应当按照成本进行计量。  （一）外购存货的成本包括：购买价款、相关税费、运输费、装卸费、保险费以及在外购存货过程发生的其他直接费用，但不含按照税法规定可以抵扣的增值税进项税额。  （二）通过进一步加工取得存货的成本包括：直接材料、直接人工以及按照一定方法分配的制造费用。  经过1年期以上的制造才能达到预定可销售状态的存货发生的借款费用，也计入存货的成本。  前款所称借款费用，是指小企业因借款而发生的利息及其他相关成本。包括：借款利息、辅助费用以及因外币借款而发生的汇兑差额等。  （三）投资者投入存货的成本，应当按照评估价值确定。  （四）提供劳务的成本包括：与劳务提供直接相关的人工费、材料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  （五）自行栽培、营造、繁殖或养殖的消耗性生物资产的成本，应当按照下列规定确定：  1．自行栽培的大田作物和蔬菜的成本包括：在收获前耗用的种子、肥料、农药等材料费、人工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  2．自行营造的林木类消耗性生物资产的成本包括：郁闭前发生的造林费、抚育费、营林设施费、良种试验费、调查设计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  3．自行繁殖的育肥畜的成本包括：出售前发生的饲料费、人工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  4．水产养殖的动物和植物的成本包括：在出售或入库前耗用的苗种、饲料、肥料等材料费、人工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  （六）盘盈存货的成本，应当按照同类或类似存货的市场价格或评估价值确定。  **第十三条** 小企业应当采用先进先出法、加权平均法或者个别计价法确定发出存货的实际成本。计价方法一经选用，不得随意变更。  对于性质和用途相似的存货，应当采用相同的成本计算方法确定发出存货的成本。  对于不能替代使用的存货、为特定项目专门购入或制造的存货以及提供的劳务，采用个别计价法确定发出存货的成本。  对于周转材料，采用一次转销法进行会计处理，在领用时按其成本计入生产成本或当期损益；金额较大的周转材料，也可以采用分次摊销法进行会计处理。出租或出借周转材料，不需要结转其成本，但应当进行备查登记。  对于已售存货，应当将其成本结转为营业成本。  **第十四条** 小企业应当根据生产特点和成本管理的要求，选择适合于本企业的成本核算对象、成本项目和成本计算方法。  小企业发生的各项生产费用，应当按照成本核算对象和成本项目分别归集。  （一）属于材料费、人工费等直接费用，直接计入基本生产成本和辅助生产成本。  （二）属于辅助生产车间为生产产品提供的动力等直接费用，可以先作为辅助生产成本进行归集，然后按照合理的方法分配计入基本生产成本；也可以直接计入所生产产品发生的生产成本。  （三）其他间接费用应当作为制造费用进行归集，月度终了，再按一定的分配标准，分配计入有关产品的成本。  **第十五条** 存货发生毁损，处置收入、可收回的责任人赔偿和保险赔款，扣除其成本、相关税费后的净额，应当计入营业外支出或营业外收入。  盘盈存货实现的收益应当计入营业外收入。  盘亏存货发生的损失应当计入营业外支出。  **第二节 长期投资**  **第十六条** 小企业的非流动资产，是指流动资产以外的资产。  小企业的非流动资产包括：长期债券投资、长期股权投资、固定资产、生产性生物资产、无形资产、长期待摊费用等。  **第十七条** 长期债券投资，是指小企业准备长期（在1年以上，下同）持有的债券投资。  **第十八条** 长期债券投资应当按照购买价款和相关税费作为成本进行计量。  实际支付价款中包含的已到付息期但尚未领取的债券利息，应当单独确认为应收利息，不计入长期债券投资的成本。  **第十九条** 长期债券投资在持有期间发生的应收利息应当确认为投资收益。  （一）分期付息、一次还本的长期债券投资，在债务人应付利息日按照票面利率计算的应收未收利息收入应当确认为应收利息，不增加长期债券投资的账面余额。  （二）一次还本付息的长期债券投资，在债务人应付利息日按照票面利率计算的应收未收利息收入应当增加长期债券投资的账面余额。  （三）债券的折价或者溢价在债券存续期间内于确认相关债券利息收入时采用直线法进行摊销。  **第二十条** 长期债券投资到期，小企业收回长期债券投资，应当冲减其账面余额。  处置长期债券投资，处置价款扣除其账面余额、相关税费后的净额，应当计入投资收益。  **第二十一条** 小企业长期债券投资符合本准则第十条所列条件之一的，减除可收回的金额后确认的无法收回的长期债券投资，作为长期债券投资损失。  长期债券投资损失应当于实际发生时计入营业外支出，同时冲减长期债券投资账面余额。  **第二十二条** 长期股权投资，是指小企业准备长期持有的权益性投资。  **第二十三条** 长期股权投资应当按照成本进行计量。  （一）以支付现金取得的长期股权投资，应当按照购买价款和相关税费作为成本进行计量。  实际支付价款中包含的已宣告但尚未发放的现金股利，应当单独确认为应收股利，不计入长期股权投资的成本。  （二）通过非货币性资产交换取得的长期股权投资，应当按照换出非货币性资产的评估价值和相关税费作为成本进行计量。  **第二十四条** 长期股权投资应当采用成本法进行会计处理。  在长期股权投资持有期间，被投资单位宣告分派的现金股利或利润，应当按照应分得的金额确认为投资收益。  **第二十五条** 处置长期股权投资，处置价款扣除其成本、相关税费后的净额，应当计入投资收益。  **第二十六条** 小企业长期股权投资符合下列条件之一的，减除可收回的金额后确认的无法收回的长期股权投资，作为长期股权投资损失：  （一）被投资单位依法宣告破产、关闭、解散、被撤销，或者被依法注销、吊销营业执照的。  （二）被投资单位财务状况严重恶化，累计发生巨额亏损，已连续停止经营3年以上，且无重新恢复经营改组计划的。  （三）对被投资单位不具有控制权，投资期限届满或者投资期限已超过10年，且被投资单位因连续3年经营亏损导致资不抵债的。  （四）被投资单位财务状况严重恶化，累计发生巨额亏损，已完成清算或清算期超过3年以上的。  （五）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长期股权投资损失应当于实际发生时计入营业外支出，同时冲减长期股权投资账面余额。  **第三节 固定资产和生产性生物资产**  **第二十七条** 固定资产，是指小企业为生产产品、提供劳务、出租或经营管理而持有的，使用寿命超过1年的有形资产。  小企业的固定资产包括：房屋、建筑物、机器、机械、运输工具、设备、器具、工具等。  **第二十八条** 固定资产应当按照成本进行计量。  （一）外购固定资产的成本包括：购买价款、相关税费、运输费、装卸费、保险费、安装费等，但不含按照税法规定可以抵扣的增值税进项税额。  以一笔款项购入多项没有单独标价的固定资产，应当按照各项固定资产或类似资产的市场价格或评估价值比例对总成本进行分配，分别确定各项固定资产的成本。  （二）自行建造固定资产的成本，由建造该项资产在竣工决算前发生的支出（含相关的借款费用）构成。  小企业在建工程在试运转过程中形成的产品、副产品或试车收入冲减在建工程成本。  （三）投资者投入固定资产的成本，应当按照评估价值和相关税费确定。  （四）融资租入的固定资产的成本，应当按照租赁合同约定的付款总额和在签订租赁合同过程中发生的相关税费等确定。  （五）盘盈固定资产的成本，应当按照同类或者类似固定资产的市场价格或评估价值，扣除按照该项固定资产新旧程度估计的折旧后的余额确定。  **第二十九条** 小企业应当对所有固定资产计提折旧，但已提足折旧仍继续使用的固定资产和单独计价入账的土地不得计提折旧。  固定资产的折旧费应当根据固定资产的受益对象计入相关资产成本或者当期损益。  前款所称折旧，是指在固定资产使用寿命内，按照确定的方法对应计折旧额进行系统分摊。应计折旧额，是指应当计提折旧的固定资产的原价（成本）扣除其预计净残值后的金额。预计净残值，是指固定资产预计使用寿命已满，小企业从该项固定资产处臵中获得的扣除预计处置费用后的净额。已提足折旧，是指已经提足该项固定资产的应计折旧额。  **第三十条** 小企业应当按照年限平均法（即直线法，下同）计提折旧。小企业的固定资产由于技术进步等原因，确需加速折旧的，可以采用双倍余额递减法和年数总和法。  小企业应当根据固定资产的性质和使用情况，并考虑税法的规定，合理确定固定资产的使用寿命和预计净残值。  固定资产的折旧方法、使用寿命、预计净残值一经确定，不得随意变更。  **第三十一条** 小企业应当按月计提折旧，当月增加的固定资产，当月不计提折旧，从下月起计提折旧；当月减少的固定资产，当月仍计提折旧，从下月起不计提折旧。  **第三十二条** 固定资产的日常修理费，应当在发生时根据固定资产的受益对象计入相关资产成本或者当期损益。  **第三十三条** 固定资产的改建支出，应当计入固定资产的成本，但已提足折旧的固定资产和经营租入的固定资产发生的改建支出应当计入长期待摊费用。  前款所称固定资产的改建支出，是指改变房屋或者建筑物结构、延长使用年限等发生的支出。  **第三十四条** 处置固定资产，处置收入扣除其账面价值、相关税费和清理费用后的净额，应当计入营业外收入或营业外支出。  前款所称固定资产的账面价值，是指固定资产原价（成本）扣减累计折旧后的金额。  盘亏固定资产发生的损失应当计入营业外支出。  **第三十五条** 生产性生物资产，是指小企业（农、林、牧、渔业）为生产农产品、提供劳务或出租等目的而持有的生物资产。包括：经济林、薪炭林、产畜和役畜等。  **第三十六条** 生产性生物资产应当按照成本进行计量。  （一）外购的生产性生物资产的成本，应当按照购买价款和相关税费确定。  （二）自行营造或繁殖的生产性生物资产的成本，应当按照下列规定确定：  1．自行营造的林木类生产性生物资产的成本包括：达到预定生产经营目的前发生的造林费、抚育费、营林设施费、良种试验费、调查设计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等必要支出。  2．自行繁殖的产畜和役畜的成本包括：达到预定生产经营目的前发生的饲料费、人工费和应分摊的间接费用等必要支出。  前款所称达到预定生产经营目的，是指生产性生物资产进入正常生产期，可以多年连续稳定产出农产品、提供劳务或出租。  **第三十七条** 生产性生物资产应当按照年限平均法计提折旧。  小企业（农、林、牧、渔业）应当根据生产性生物资产的性质和使用情况，并考虑税法的规定，合理确定生产性生物资产的使用寿命和预计净残值。  生产性生物资产的折旧方法、使用寿命、预计净残值一经确定，不得随意变更。  小企业（农、林、牧、渔业）应当自生产性生物资产投入使用月份的下月起按月计提折旧；停止使用的生产性生物资产，应当自停止使用月份的下月起停止计提折旧。  **第四节 无形资产**  **第三十八条** 无形资产，是指小企业为生产产品、提供劳务、出租或经营管理而持有的、没有实物形态的可辨认非货币性资产。  小企业的无形资产包括：土地使用权、专利权、商标权、著作权、非专利技术等。  自行开发建造厂房等建筑物，相关的土地使用权与建筑物应当分别进行处理。外购土地及建筑物支付的价款应当在建筑物与土地使用权之间按照合理的方法进行分配；难以合理分配的，应当全部作为固定资产。  **第三十九条** 无形资产应当按照成本进行计量。  （一）外购无形资产的成本包括：购买价款、相关税费和相关的其他支出（含相关的借款费用）。  （二）投资者投入的无形资产的成本，应当按照评估价值和相关税费确定。  （三）自行开发的无形资产的成本，由符合资本化条件后至达到预定用途前发生的支出（含相关的借款费用）构成。  **第四十条** 小企业自行开发无形资产发生的支出，同时满足下列条件的，才能确认为无形资产：  （一）完成该无形资产以使其能够使用或出售在技术上具有可行性；  （二）具有完成该无形资产并使用或出售的意图；  （三）能够证明运用该无形资产生产的产品存在市场或无形资产自身存在市场，无形资产将在内部使用的，应当证明其有用性；  （四）有足够的技术、财务资源和其他资源支持，以完成该无形资产的开发，并有能力使用或出售该无形资产；  （五）归属于该无形资产开发阶段的支出能够可靠地计量。  **第四十一条** 无形资产应当在其使用寿命内采用年限平均法进行摊销，根据其受益对象计入相关资产成本或者当期损益。  无形资产的摊销期自其可供使用时开始至停止使用或出售时止。有关法律规定或合同约定了使用年限的，可以按照规定或约定的使用年限分期摊销。  小企业不能可靠估计无形资产使用寿命的，摊销期不得低于10年。  **第四十二条** 处置无形资产，处置收入扣除其账面价值、相关税费等后的净额，应当计入营业外收入或营业外支出。  前款所称无形资产的账面价值，是指无形资产的成本扣减累计摊销后的金额。  **第五节 长期待摊费用**  **第四十三条** 小企业的长期待摊费用包括：已提足折旧的固定资产的改建支出、经营租入固定资产的改建支出、固定资产的大修理支出和其他长期待摊费用等。  前款所称固定资产的大修理支出，是指同时符合下列条件的支出：  （一）修理支出达到取得固定资产时的计税基础50%以上；  （二）修理后固定资产的使用寿命延长2年以上。  **第四十四条** 长期待摊费用应当在其摊销期限内采用年限平均法进行摊销，根据其受益对象计入相关资产的成本或者管理费用，并冲减长期待摊费用。  （一）已提足折旧的固定资产的改建支出，按照固定资产预计尚可使用年限分期摊销。  （二）经营租入固定资产的改建支出，按照合同约定的剩余租赁期限分期摊销。  （三）固定资产的大修理支出，按照固定资产尚可使用年限分期摊销。  （四）其他长期待摊费用，自支出发生月份的下月起分期摊销，摊销期不得低于3年。  **第三章 负 债**  **第四十五条** 负债，是指小企业过去的交易或者事项形成的，预期会导致经济利益流出小企业的现时义务。  小企业的负债按照其流动性，可分为流动负债和非流动负债。  **第一节 流动负债**  **第四十六条** 小企业的流动负债，是指预计在1年内或者超过1年的一个正常营业周期内清偿的债务。  小企业的流动负债包括：短期借款、应付及预收款项、应付职工薪酬、应交税费、应付利息等。  **第四十七条** 各项流动负债应当按照其实际发生额入账。  小企业确实无法偿付的应付款项，应当计入营业外收入。  **第四十八条** 短期借款应当按照借款本金和借款合同利率在应付利息日计提利息费用，计入财务费用。  **第四十九条** 应付职工薪酬，是指小企业为获得职工提供的服务而应付给职工的各种形式的报酬以及其他相关支出。  小企业的职工薪酬包括：  （一）职工工资、奖金、津贴和补贴。  （二）职工福利费。  （三）医疗保险费、养老保险费、失业保险费、工伤保险费和生育保险费等社会保险费。  （四）住房公积金。  （五）工会经费和职工教育经费。  （六）非货币性福利。  （七）因解除与职工的劳动关系给予的补偿。  （八）其他与获得职工提供的服务相关的支出等。  **第五十条** 小企业应当在职工为其提供服务的会计期间，将应付的职工薪酬确认为负债，并根据职工提供服务的受益对象，分别下列情况进行会计处理：  （一）应由生产产品、提供劳务负担的职工薪酬，计入产品成本或劳务成本。  （二）应由在建工程、无形资产开发项目负担的职工薪酬，计入固定资产成本或无形资产成本。  （三）其他职工薪酬（含因解除与职工的劳动关系给予的补偿），计入当期损益。  **第二节 非流动负债**  **第五十一条** 小企业的非流动负债，是指流动负债以外的负债。  小企业的非流动负债包括：长期借款、长期应付款等。  **第五十二条** 非流动负债应当按照其实际发生额入账。  长期借款应当按照借款本金和借款合同利率在应付利息日计提利息费用，计入相关资产成本或财务费用。  **第四章 所有者权益**  **第五十三条** 所有者权益，是指小企业资产扣除负债后由所有者享有的剩余权益。  小企业的所有者权益包括：实收资本（或股本，下同）、资本公积、盈余公积和未分配利润。  **第五十四条** 实收资本，是指投资者按照合同协议约定或相关规定投入到小企业、构成小企业注册资本的部分。  （一）小企业收到投资者以现金或非货币性资产投入的资本，应当按照其在本企业注册资本中所占的份额计入实收资本，超出的部分，应当计入资本公积。  （二）投资者根据有关规定对小企业进行增资或减资，小企业应当增加或减少实收资本。  **第五十五条** 资本公积，是指小企业收到的投资者出资额超过其在注册资本或股本中所占份额的部分。  小企业用资本公积转增资本，应当冲减资本公积。小企业的资本公积不得用于弥补亏损。  **第五十六条** 盈余公积，是指小企业按照法律规定在税后利润中提取的法定公积金和任意公积金。  小企业用盈余公积弥补亏损或者转增资本，应当冲减盈余公积。小企业的盈余公积还可以用于扩大生产经营。  **第五十七条** 未分配利润，是指小企业实现的净利润，经过弥补亏损、提取法定公积金和任意公积金、向投资者分配利润后，留存在本企业的、历年结存的利润。  **第五章 收 入**  **第五十八条** 收入，是指小企业在日常生产经营活动中形成的、会导致所有者权益增加、与所有者投入资本无关的经济利益的总流入。包括：销售商品收入和提供劳务收入。  **第五十九条** 销售商品收入，是指小企业销售商品（或产成品、材料，下同）取得的收入。  通常，小企业应当在发出商品且收到货款或取得收款权利时，确认销售商品收入。  （一）销售商品采用托收承付方式的，在办妥托收手续时确认收入。  （二）销售商品采取预收款方式的，在发出商品时确认收入。  （三）销售商品采用分期收款方式的，在合同约定的收款日期确认收入。  （四）销售商品需要安装和检验的，在购买方接受商品以及安装和检验完毕时确认收入。安装程序比较简单的，可在发出商品时确认收入。  （五）销售商品采用支付手续费方式委托代销的，在收到代销清单时确认收入。  （六）销售商品以旧换新的，销售的商品作为商品销售处理，回收的商品作为购进商品处理。  （七）采取产品分成方式取得的收入，在分得产品之日按照产品的市场价格或评估价值确定销售商品收入金额。  **第六十条** 小企业应当按照从购买方已收或应收的合同或协议价款，确定销售商品收入金额。  销售商品涉及现金折扣的，应当按照扣除现金折扣前的金额确定销售商品收入金额。现金折扣应当在实际发生时，计入当期损益。  销售商品涉及商业折扣的，应当按照扣除商业折扣后的金额确定销售商品收入金额。  前款所称现金折扣，是指债权人为鼓励债务人在规定的期限内付款而向债务人提供的债务扣除。商业折扣，是指小企业为促进商品销售而在商品标价上给予的价格扣除。  **第六十一条** 小企业已经确认销售商品收入的售出商品发生的销售退回（不论属于本年度还是属于以前年度的销售），应当在发生时冲减当期销售商品收入。  小企业已经确认销售商品收入的售出商品发生的销售折让，应当在发生时冲减当期销售商品收入。  前款所称销售退回，是指小企业售出的商品由于质量、品种不符合要求等原因发生的退货。销售折让，是指小企业因售出商品的质量不合格等原因而在售价上给予的减让。  **第六十二条** 小企业提供劳务的收入，是指小企业从事建筑安装、修理修配、交通运输、仓储租赁、邮电通信、咨询经纪、文化体育、科学研究、技术服务、教育培训、餐饮住宿、中介代理、卫生保健、社区服务、旅游、娱乐、加工以及其他劳务服务活动取得的收入。  **第六十三条** 同一会计年度内开始并完成的劳务，应当在提供劳务交易完成且收到款项或取得收款权利时，确认提供劳务收入。提供劳务收入的金额为从接受劳务方已收或应收的合同或协议价款。  劳务的开始和完成分属不同会计年度的，应当按照完工进度确认提供劳务收入。年度资产负债表日，按照提供劳务收入总额乘以完工进度扣除以前会计年度累计已确认提供劳务收入后的金额，确认本年度的提供劳务收入；同时，按照估计的提供劳务成本总额乘以完工进度扣除以前会计年度累计已确认营业成本后的金额，结转本年度营业成本。  **第六十四条** 小企业与其他企业签订的合同或协议包含销售商品和提供劳务时，销售商品部分和提供劳务部分能够区分且能够单独计量的，应当将销售商品的部分作为销售商品处理，将提供劳务的部分作为提供劳务处理。  销售商品部分和提供劳务部分不能够区分，或虽能区分但不能够单独计量的，应当作为销售商品处理。  **第六章 费 用**  **第六十五条** 费用，是指小企业在日常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会导致所有者权益减少、与向所有者分配利润无关的经济利益的总流出。  小企业的费用包括：营业成本、营业税金及附加、销售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等。  （一）营业成本，是指小企业所销售商品的成本和所提供劳务的成本。  （二）营业税金及附加，是指小企业开展日常生产经营活动应负担的消费税、营业税、城市维护建设税、资源税、土地增值税、城镇土地使用税、房产税、车船税、印花税和教育费附加、矿产资源补偿费、排污费等。  （三）销售费用，是指小企业在销售商品或提供劳务过程中发生的各种费用。包括：销售人员的职工薪酬、商品维修费、运输费、装卸费、包装费、保险费、广告费、业务宣传费、展览费等费用。  小企业（批发业、零售业）在购买商品过程中发生的费用（包括：运输费、装卸费、包装费、保险费、运输途中的合理损耗和入库前的挑选整理费等）也构成销售费用。  （四）管理费用，是指小企业为组织和管理生产经营发生的其他费用。包括：小企业在筹建期间内发生的开办费、行政管理部门发生的费用（包括：固定资产折旧费、修理费、办公费、水电费、差旅费、管理人员的职工薪酬等）、业务招待费、研究费用、技术转让费、相关长期待摊费用摊销、财产保险费、聘请中介机构费、咨询费（含顾问费）、诉讼费等费用。  （五）财务费用，是指小企业为筹集生产经营所需资金发生的筹资费用。包括：利息费用（减利息收入）、汇兑损失、银行相关手续费、小企业给予的现金折扣（减享受的现金折扣）等费用。  **第六十六条** 通常，小企业的费用应当在发生时按照其发生额计入当期损益。  小企业销售商品收入和提供劳务收入已予确认的，应当将已销售商品和已提供劳务的成本作为营业成本结转至当期损益。  **第七章 利润及利润分配**  **第六十七条** 利润，是指小企业在一定会计期间的经营成果。包括：营业利润、利润总额和净利润。  （一）营业利润，是指营业收入减去营业成本、营业税金及附加、销售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加上投资收益（或减去投资损失）后的金额。  前款所称营业收入，是指小企业销售商品和提供劳务实现的收入总额。投资收益，由小企业股权投资取得的现金股利（或利润）、债券投资取得的利息收入和处置股权投资和债券投资取得的处置价款扣除成本或账面余额、相关税费后的净额三部分构成。  （二）利润总额，是指营业利润加上营业外收入，减去营业外支出后的金额。  （三）净利润，是指利润总额减去所得税费用后的净额。  **第六十八条** 营业外收入，是指小企业非日常生产经营活动形成的、应当计入当期损益、会导致所有者权益增加、与所有者投入资本无关的经济利益的净流入。  小企业的营业外收入包括：非流动资产处置净收益、政府补助、捐赠收益、盘盈收益、汇兑收益、出租包装物和商品的租金收入、逾期未退包装物押金收益、确实无法偿付的应付款项、已作坏账损失处理后又收回的应收款项、违约金收益等。  通常，小企业的营业外收入应当在实现时按照其实现金额计入当期损益。  **第六十九条** 政府补助，是指小企业从政府无偿取得货币性资产或非货币性资产，但不含政府作为小企业所有者投入的资本。  （一）小企业收到与资产相关的政府补助，应当确认为递延收益，并在相关资产的使用寿命内平均分配，计入营业外收入。  收到的其他政府补助，用于补偿本企业以后期间的相关费用或亏损的，确认为递延收益，并在确认相关费用或发生亏损的期间，计入营业外收入；用于补偿本企业已发生的相关费用或亏损的，直接计入营业外收入。  （二）政府补助为货币性资产的，应当按照收到的金额计量。  政府补助为非货币性资产的，政府提供了有关凭据的，应当按照凭据上标明的金额计量；政府没有提供有关凭据的，应当按照同类或类似资产的市场价格或评估价值计量。  （三）小企业按照规定实行企业所得税、增值税、消费税、营业税等先征后返的，应当在实际收到返还的企业所得税、增值税（不含出口退税）、消费税、营业税时，计入营业外收入。  **第七十条** 营业外支出，是指小企业非日常生产经营活动发生的、应当计入当期损益、会导致所有者权益减少、与向所有者分配利润无关的经济利益的净流出。  小企业的营业外支出包括：存货的盘亏、毁损、报废损失，非流动资产处置净损失，坏账损失，无法收回的长期债券投资损失，无法收回的长期股权投资损失，自然灾害等不可抗力因素造成的损失，税收滞纳金，罚金，罚款，被没收财物的损失，捐赠支出，赞助支出等。  通常，小企业的营业外支出应当在发生时按照其发生额计入当期损益。  **第七十一条** 小企业应当按照企业所得税法规定计算的当期应纳税额，确认所得税费用。  小企业应当在利润总额的基础上，按照企业所得税法规定进行纳税调整，计算出当期应纳税所得额，按照应纳税所得额与适用所得税税率为基础计算确定当期应纳税额。  **第七十二条** 小企业以当年净利润弥补以前年度亏损等剩余的税后利润，可用于向投资者进行分配。  小企业（公司制）在分配当年税后利润时，应当按照公司法的规定提取法定公积金和任意公积金。  **第八章 外币业务**  **第七十三条** 小企业的外币业务由外币交易和外币财务报表折算构成。  **第七十四条** 外币交易，是指小企业以外币计价或者结算的交易。  小企业的外币交易包括：买入或者卖出以外币计价的商品或者劳务、借入或者借出外币资金和其他以外币计价或者结算的交易。  前款所称外币，是指小企业记账本位币以外的货币。记账本位币，是指小企业经营所处的主要经济环境中的货币。  **第七十五条** 小企业应当选择人民币作为记账本位币。业务收支以人民币以外的货币为主的小企业，可以选定其中一种货币作为记账本位币，但编报的财务报表应当折算为人民币财务报表。  小企业记账本位币一经确定，不得随意变更，但小企业经营所处的主要经济环境发生重大变化除外。  小企业因经营所处的主要经济环境发生重大变化，确需变更记账本位币的，应当采用变更当日的即期汇率将所有项目折算为变更后的记账本位币。  前款所称即期汇率，是指中国人民银行公布的当日人民币外汇牌价的中间价。  **第七十六条** 小企业对于发生的外币交易，应当将外币金额折算为记账本位币金额。  外币交易在初始确认时，采用交易发生日的即期汇率将外币金额折算为记账本位币金额；也可以采用交易当期平均汇率折算。  小企业收到投资者以外币投入的资本，应当采用交易发生日即期汇率折算，不得采用合同约定汇率和交易当期平均汇率折算。  **第七十七条** 小企业在资产负债表日，应当按照下列规定对外币货币性项目和外币非货币性项目进行会计处理：  （一）外币货币性项目，采用资产负债表日的即期汇率折算。因资产负债表日即期汇率与初始确认时或者前一资产负债表日即期汇率不同而产生的汇兑差额，计入当期损益。  （二）以历史成本计量的外币非货币性项目，仍采用交易发生日的即期汇率折算，不改变其记账本位币金额。  前款所称货币性项目，是指小企业持有的货币资金和将以固定或可确定的金额收取的资产或者偿付的负债。货币性项目分为货币性资产和货币性负债。货币性资产包括：库存现金、银行存款、应收账款、其他应收款等；货币性负债包括：短期借款、应付账款、其他应付款、长期借款、长期应付款等。非货币性项目，是指货币性项目以外的项目。包括：存货、长期股权投资、固定资产、无形资产等。  **第七十八条** 小企业对外币财务报表进行折算时，应当采用资产负债表日的即期汇率对外币资产负债表、利润表和现金流量表的所有项目进行折算。  **第九章 财务报表**  **第七十九条** 财务报表，是指对小企业财务状况、经营成果和现金流量的结构性表述。小企业的财务报表至少应当包括下列组成部分：  （一）资产负债表；  （二）利润表；  （三）现金流量表；  （四）附注。  **第八十条** 资产负债表，是指反映小企业在某一特定日期的财务状况的报表。  （一）资产负债表中的资产类至少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1．货币资金；  2．应收及预付款项；  3．存货；  4．长期债券投资；  5．长期股权投资；  6．固定资产；  7．生产性生物资产；  8．无形资产；  9．长期待摊费用。  （二）资产负债表中的负债类至少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1．短期借款；  2．应付及预收款项；  3．应付职工薪酬；  4．应交税费；  5．应付利息；  6．长期借款；  7．长期应付款。  （三）资产负债表中的所有者权益类至少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1．实收资本；  2．资本公积；  3．盈余公积；  4．未分配利润。  （四）资产负债表中的资产类应当包括流动资产和非流动资产的合计项目；负债类应当包括流动负债、非流动负债和负债的合计项目；所有者权益类应当包括所有者权益的合计项目。  资产负债表应当列示资产总计项目，负债和所有者权益总计项目。  **第八十一条** 利润表，是指反映小企业在一定会计期间的经营成果的报表。  费用应当按照功能分类，分为营业成本、营业税金及附加、销售费用、管理费用和财务费用等。  利润表至少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一）营业收入；  （二）营业成本；  （三）营业税金及附加；  （四）销售费用；  （五）管理费用；  （六）财务费用；  （七）所得税费用；  （八）净利润。  **第八十二条** 现金流量表，是指反映小企业在一定会计期间现金流入和流出情况的报表。  现金流量表应当分别经营活动、投资活动和筹资活动列报现金流量。现金流量应当分别按照现金流入和现金流出总额列报。  前款所称现金，是指小企业的库存现金以及可以随时用于支付的存款和其他货币资金。  **第八十三条** 经营活动，是指小企业投资活动和筹资活动以外的所有交易和事项。  小企业经营活动产生的现金流量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一）销售产成品、商品、提供劳务收到的现金；  （二）购买原材料、商品、接受劳务支付的现金；  （三）支付的职工薪酬；  （四）支付的税费。  **第八十四条** 投资活动，是指小企业固定资产、无形资产、其他非流动资产的购建和短期投资、长期债券投资、长期股权投资及其处置活动。  小企业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量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一）收回短期投资、长期债券投资和长期股权投资收到的现金；  （二）取得投资收益收到的现金；  （三）处置固定资产、无形资产和其他非流动资产收回的现金净额；  （四）短期投资、长期债券投资和长期股权投资支付的现金；  （五）购建固定资产、无形资产和其他非流动资产支付的现金。  **第八十五条** 筹资活动，是指导致小企业资本及债务规模和构成发生变化的活动。  小企业筹资活动产生的现金流量应当单独列示反映下列信息的项目：  （一）取得借款收到的现金；  （二）吸收投资者投资收到的现金；  （三）偿还借款本金支付的现金；  （四）偿还借款利息支付的现金；  （五）分配利润支付的现金。  **第八十六条** 附注，是指对在资产负债表、利润表和现金流量表等报表中列示项目的文字描述或明细资料，以及对未能在这些报表中列示项目的说明等。  附注应当按照下列顺序披露：  （一）遵循小企业会计准则的声明。  （二）短期投资、应收账款、存货、固定资产项目的说明。  （三）应付职工薪酬、应交税费项目的说明。  （四）利润分配的说明。  （五）用于对外担保的资产名称、账面余额及形成的原因；未决诉讼、未决仲裁以及对外提供担保所涉及的金额。  （六）发生严重亏损的，应当披露持续经营的计划、未来经营的方案。  （七）对已在资产负债表和利润表中列示项目与企业所得税法规定存在差异的纳税调整过程。  （八）其他需要在附注中说明的事项。  **第八十七条** 小企业应当根据实际发生的交易和事项，按照本准则的规定进行确认和计量，在此基础上按月或者按季编制财务报表。  **第八十八条** 小企业对会计政策变更、会计估计变更和会计差错更正应当采用未来适用法进行会计处理。  前款所称会计政策，是指小企业在会计确认、计量和报告中所采用的原则、基础和会计处理方法。会计估计变更，是指由于资产和负债的当前状况及预期经济利益和义务发生了变化，从而对资产或负债的账面价值或者资产的定期消耗金额进行调整。前期差错包括：计算错误、应用会计政策错误、应用会计估计错误等。未来适用法，是指将变更后的会计政策和会计估计应用于变更日及以后发生的交易或者事项，或者在会计差错发生或发现的当期更正差错的方法。  **第十章 附 则**  **第八十九条** 符合《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所规定的微型企业标准的企业参照执行本准则。  **第九十条** 本准则自2013年1月1日起施行。财政部2004年发布的《小企业会计制度》（财会[2004]2号）同时废止。  附录：小企业会计准则——会计科目、主要账务处理和财务报表 |